

EPA (미국 환경보호국)

1. 개요

<p>■ 정의</p>	<p>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국)</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A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1970년 설립한 기구로서, 환경법에 근거한 관련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국가재정지원 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EPA는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며, 일단 EPA에서 발표한 규제가 시행되면, 이는 각 개인을 비롯하여, 사업장, 각주,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등 모든 미주 거주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 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규들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규제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법들이 많다. EPA는 미국 의회가 이러한 환경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규제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관으로 EPA를 지정하였다. 대통령 행정규칙(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EOs)의 적용 또한 EPA 활동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시행을 위해 EPA는 Civil Enforcement, Cleanup Enforcement, 그리고 Criminal Enforce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EPA (환경보호국) www.epa.gov
<p>■ 적용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R 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 EPA가 환경법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시행하는 규제들에는, Atomic Energy Act(AEA), Clean Air Act(CAA), Clean Water Act(CWA), Endangered Species Act(ESA), Energy Policy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A), Oil Pollution Act(OPA) 등이 있다.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2. 기관소개

가. 기관개요

1970년 7월에 정부와 의회는 쾌적한 자연, 많은 물, 깨끗한 공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환경보호국을 설립했다. 환경보호국 설립 이전 연방정부는 건강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환경보호국을 설립하여 이미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전국 17,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워싱턴 D.C 의 중앙 본부를 포함 12개 이상의 연구소와 10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다. 직원들은 모두 고등교육과 전문기술을 갖추었으며, 많은 수의 직원들이 기술자, 과학자 및 정책 분석가이다. 대다수의 직원이 법률, 공공정책, 재무, 정보관리 및 컴퓨터 전문가이다. 환경보호국은 미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환경 보호국장이 총괄하고 있다.

나. 업무소개

환경보호국은 국가의 환경관련 과학, 연구, 교육 및 평가에 노력하고 있다.

(1) 법 규제의 개발과 시행

환경보호국은 의회가 제정한 환경법에 근거하여 환경법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또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에 국가 기준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 또한 각 주 정부와 인디언 보호구역에 법치 준수 및 감시, 환경관련 허가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다.

환경보호국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기준이 미달되는 지역에 제재 및 여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국가재정지원

최근 몇 년간 환경보호국은 책정된 예산의 40-50 퍼센트를 연구 보조금으로 각 주 환경 프로그램에 제공하였다. 환경보호국의 예산은 주 정부, 비영리 및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양질의 연구에 제공되며,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 문제 결정에 과학적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고 환경보호국의 환경목표를 완성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국은 연구 지원금과 장학기금을 지원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주 정부 및 중소기업에 환경 서비스 및 프로젝트에 관한 재정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3) 환경에 관한 연구 수행

환경보호국은 전국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당면한 환경문제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민간단체 학계 그 밖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당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며 환경위기 평가와 관리를 위해 과학 및 기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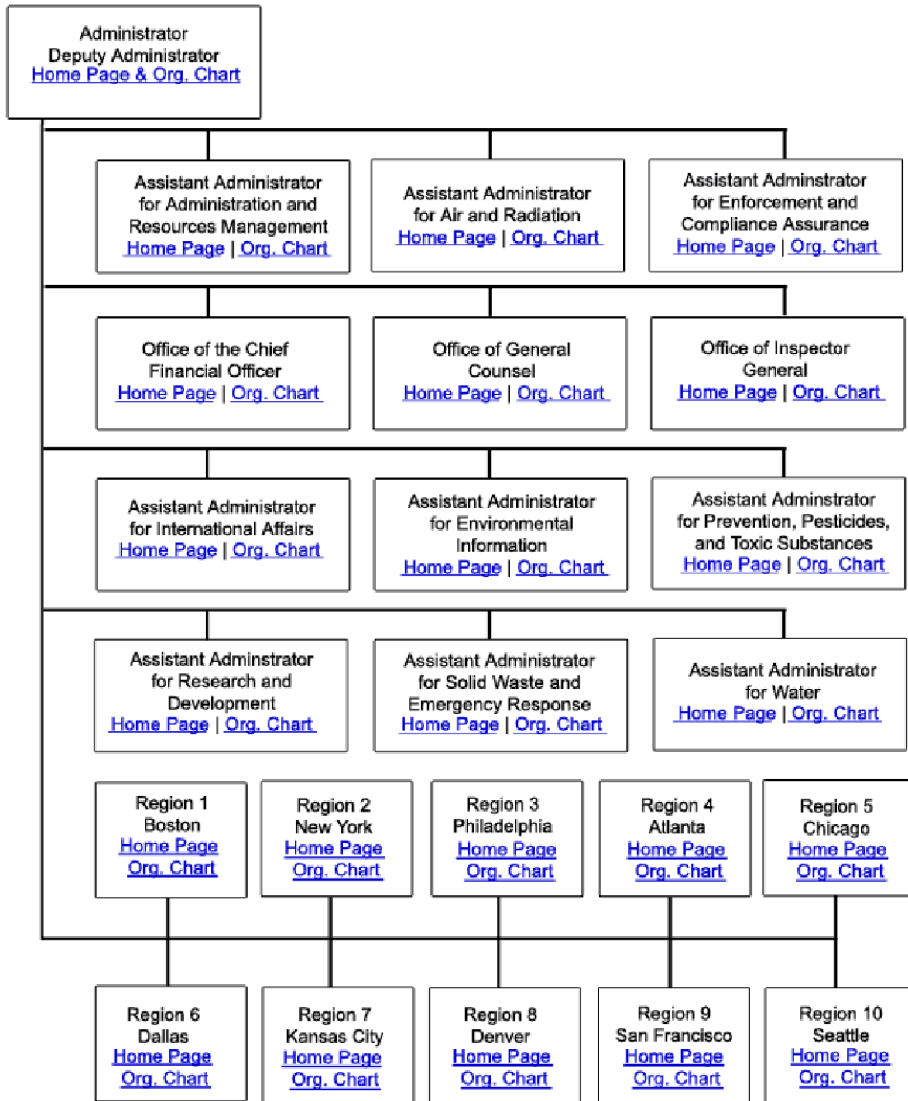
(4) 자원봉사 협력단체와 프로그램 후원

중앙본부와 지역 사무소를 통해 10,000여 개가 넘는 업계, 사업체, 비 영리기구와 각 주정부와 협력 하여 40개가 넘는 자원봉사 오염 방지 예방 프로그램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협력기관은 자발적으로 오염 관리 목표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 수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및, 독성물질 방출 줄이기, 자원 재활용 실내공기 오염 통제, 살충제 위험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국은 중요 공공 지침과 이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5) 그 밖의 업무

환경보호국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국은 문서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환경보호국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조직도



라. Contact

EPA는 지역별 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각 사무소가 그 주 및 지역에 대한 법률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1) 주본부 사무소

- USEPA Ariel Rios Building (AR)
12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 USEPA West (EPA West) [Old Customs Building]

130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 USEPA East (EPA East) [Old ICC Building]

120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 USEPA Ronald Reagan Building (RRB)

13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2) 지역사무소

- Region 1 (CT, MA, ME, NH, RI, VT)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 Congress St. Suite 1100

Boston, MA 02114-2023

<http://www.epa.gov/region01/>

Phone: (617) 918-1111

Fax: (617) 918-1809

Toll free within Region 1: (888) 372-7341

- Region 2 (NJ, NY, PR, VI)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90 Broadway

New York, NY 10007-1866

<http://www.epa.gov/region02/>

Phone: (212) 637-3000

Fax: (212) 637-3526

- Region 3 (DC, DE, MD, PA, VA, W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650 Arch Street

Philadelphia, PA 19103-2029

<http://www.epa.gov/region03/>

Phone: (215) 814-5000

Fax: (215) 814-5103

Toll free: (800) 438-2474

Email: r3public@epa.gov

- Region 4 (AL, FL, GA, KY, MS, NC, SC, T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tlanta Federal Center

61 Forsyth Street, SW

Atlanta, GA 30303-3104

<http://www.epa.gov/region04/>

Phone: (404) 562-9900

Fax: (404) 562-8174

Toll free: (800) 241-1754

- Region 5 (IL, IN, MI, MN, OH, WI)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77 West Jackson Boulevard

Chicago, IL 60604-3507

<http://www.epa.gov/region5/>

Phone: (312) 353-2000

Fax: (312) 353-4135

Toll free within Region 5: (800) 621-8431

- Region 6 (AR, LA, NM, OK, TX)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ountain Place 12th Floor, Suite 1200
1445 Ross Avenue
Dallas, TX 75202-2733
<http://www.epa.gov/region06/>
Phone: (214) 665-2200
Fax: (214) 665-7113
Toll free within Region 6: (800) 887-6063

- Region 7 (IA, KS, MO, N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901 North 5th Street
Kansas City, KS 66101
<http://www.epa.gov/region07/>
Phone: (913) 551-7003
Toll free: (800) 223-0425

- Region 8 (CO, MT, ND, SD, UT, W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595 Wynkoop St.
Denver, CO 80202-1129
<http://www.epa.gov/region08/>
Phone: (303) 312-6312
Fax: (303) 312-6339
Toll free: (800) 227-8917
Email: r8eisc@epa.gov

- Region 9 (AZ, CA, HI, N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75 Hawthorn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http://www.epa.gov/region09/>

Phone: (415) 947-8000

(866) EPA-WEST (toll free in Region 9)

Fax: (415) 947-3553

Email: r9.info@epa.gov

- Region 10 (AK, ID, OR, W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200 Sixth Avenue, Suite 900

Seattle, WA 98101

<http://www.epa.gov/region10/>

Phone: (206) 553-1200

Fax: (206) 553-2955

Toll free: (800) 424-4372

3. EPA의 법률적용

환경에 관한 공식적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시행하여 실제로 각 개인, 기업,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할지는 상세히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미정부는 환경보호국과 같은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규제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일단 EPA가 발표한 규제사항의 효력이 발휘되면, EPA는 국민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제법을 집행한다.

4. EPA의 적용규제 법규

아래의 법규 및 EO(대통령 행정규칙)는 인류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며, EPA가 이들의 집행을 담당한다.

- Atomic Energy Act (AEA)

- Clean Air Act (CAA)

- Clean Water Act (CWA)

(original titl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mendments of 1972)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or Superfund)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 Endangered Species Act (ESA)
- Energy Policy Act
- EO 12898: Federal Actions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in Minority Populations and Low-Income Populations
- EO 13045: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 EO 13211: Actions Concerning Regulations That Significantly Affect Energy Supply, Distribution, or Use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mendments - Clean Water Act
-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MPRSA, also known as the Ocean Dumping Act)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NTTAA)
- Nuclear Waste Policy Act (NWP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A)
- Ocean Dumping Act -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 Oil Pollution Act (OPA)
- Pollution Prevention Act (PP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 Superfund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5. EPA 규제의 집행

EPA는 깨끗한 공기, 청정한 물, 토지의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환경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PA의 Civil Enforcement, Cleanup

Enforcement, Criminal Enforcement 프로그램을 사법부, 주정부 등과 함께 연방정부 및 주정부 모두에 합법한 규제를 시행하여 연방환경법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법은 기업, 개인, 조직, 공공 기관(예: 수질 관리 당국)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들을 규제한다. EPA 집행 프로그램들은 연방법의 특정 측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연방 소유의 시설 또는 사업체에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연방 설비 집행(Federal Facility Enforcement) 프로그램이 1차적 책임을 맡게 된다. 방치된 폐기물, 민간 시설 또는 연방 시설에 대한 정화 또는 청소가 필요할 경우 정화 집행(Clean Up Enforcement) 프로그램이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의도적, 계획적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건은 집행 조치를 위해 형사 집행(Criminal Enforcement) 프로그램으로 회부된다.

가.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EPA의 민사 집행 프로그램은 연방 환경법의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 집행에는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조사 및 소송 사건과 EPA 행정 조치, 그리고 법무부에 회부된 사법 사건 등이 포함된다. EPA는 연방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책임을 나눠 갖는 주 정부 뿐 아니라 각 부족 및 연방 정부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민사 집행 조치는 위반자가 법규를 다시 준수하게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애쓰는 책임감 있는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 하는 등의 다양한 중요한 목표들을 이행한다. EPA는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강조하며, 위험을 바탕으로 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주 당국이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포괄적 협의를 진행한다.

EPA의 민사 집행 프로그램은 오염자들로 하여금 연방 환경법을 준수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 EPA는 매년 수백만 톤의 불법 오염 물질이 대기, 수계 및 토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오염 문제의 정화를 보장하며, 오염원의 재발을 방지한다.

EPA는 민사 처벌의 평가에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세 가지의 경제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모델을 활용한다.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위반자는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는가?
- 위반자가 법규 준수, 정화, 민사 처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SEP(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 - 처벌 책임의 완화에 있어서 위반자가 법규 준수를 넘어선 조치 취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실질적 부대비용은 얼마인가?

SEP(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 정책은 민사 재판 또는 행정 집행 조치의 해결을 위해 집행 프로그램이 활용하는 많은 도구들 중의 하나이다. SEP 정책은 다른 방식으로는 피고에 법적 이행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환경적으로 이로운 프로젝트를 해결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준다. 위반자의 SEP 이행 의지는 EPA가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나. 정화집행(Cleanup Enforcement)

EPA의 정화 집행 프로그램은 위험한 폐기물 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이를 정화하거나 EPA의 정화 비용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EPA는 특정 정화 상황에 맞게 여러 정화기관들을 독립적 또는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EPA의 모든 법규와 관련한 정화 조치 불이행 문제에 대한 집행 정보는 민사 집행(Civil Enforcement)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아래 언급된 기관들을 활용한 연방 시설에서의 정화 집행에 대한 정보는 연방 시설 정화 집행(Federal Facilities Cleanup Enforcement)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1) 슈퍼 펀드(Superfund): EPA가 가장 흔히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정화 집행 메커니즘은 종합 환경 대처 보상 책임 법령(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또는 슈퍼 펀드)이다. 슈퍼 펀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의 운영을 규제하는 유일한 정화 당국이다.

(2) RCRA: 지하 저장 탱크(Underground Storage Tank)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원 보호 및 회복 법령(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에는 정화 및 규제 당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추가적 정화 당국: 기타의 몇몇 환경 법령들은 기름 유출이나 공공 보건에 즉각적이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정화 당국들을 EPA를 위해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 정화 당국들은 다음의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 유류 오염 법령(Oil Pollution Act, OPA)
- 안전 음용수 법령(Safe Drinking Water Act, SDWA)
- 청정 수질 법령(Clean Water Act, CWA)
- 청정 대기 법령(Clean Air Act, CAA)

(4) 재개발 산업 단지과 재개발: EPA는 정화된 폐기물 현장의 적절한 재개발을 지원한다. 재개발에 있어서 정화 집행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위험 물질의 정화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

EPA의 정화 집행 사무소(Office of Site Remediation Enforcement)는 CERCLA(슈퍼펀드), RCRA(지하 저장 탱크 프로그램 포함), OPA(유류) 하의 전국적 정화 집행 프로그램의 감독과 재개발 촉진을 위한 정화 책임 문제의 처리를 1차적으로 책임진다.

EPA의 민사 집행 사무소(Office of Civil Enforcement)는 CAA(청정 대기), CWA(청정 수질), SDWA(음용수) 하의 정화 집행 문제의 감독과 EPA 법규 하의 정화 조치 불이행 문제의 집행을 책임진다.

EPA의 연방 시설 집행 사무소(Federal Facilities Enforcement Office)는 위에 언급된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연방 시설에 대한 정화 집행 감독 책임을 진다.

다. 형사집행(Criminal Enforcement)

EPA의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1982년에 설립되었다. 환경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대를 인식한 의회는 1988년 EPA에 전적인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였고, 1990년에는 오염 기소 법령(Pollution Prosecution Act)의 발효를 통해 프로그램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형사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사기 사건(예: 민간 연구소가 주 또는 연방 환경 기관에 잘못된 환경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 심각한 상해와 죽음을 야기하는 무차별적

폐기물 투기, 산업계 전반에서 자행 있는 크루즈선을 통한 해양 투기, 수로, 습지, 해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름 유출, 오존층을 파괴하고 발암 위험을 높이는 CFC 냉매의 국제 밀수, 어린이, 빈곤층 및 심각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노출시키는 농약, 석면 등과 같은 위험 물질의 불법적 처리 등을 포함, 주요 환경 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건들이 성공적으로 기소되어 왔다.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잘 훈련된 전속 연 방법 집행 대리인들과 환경 법의학자 및 엔지니어, 검사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40개가 넘는 지역 및 현장 사무소와 콜로라도 주 덴버의 법의학 연구소, 워싱턴 D.C. 와 콜로라도 주 덴버의 교육 시설, 조지아 주 글린코(Glynco)의 연방법 집행 교육 센터(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등의 지원을 받는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형사적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공적 기소와 다른 정부 부서의 형사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해 다른 연방, 주, 부족, 지역 법 집행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EPA의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법규 위반의 억제와 법규 준수 보장을 위해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가장 심각한 환경 위반 행위와 국제적, 계획적, 의도적 법령 위반을 포함한 악명 높은 과실 또는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이용된다.